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0

발의연월일: 2024. 7. 22.

발 의 자:김현정·박균택·전재수

박정현 • 이개호 • 박 정

김동아 • 민병덕 • 남인순

강준현 · 양문석 · 맹성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나 특정 이슈를 자극적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또한,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통신매체를 이용한 폭력)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의2(통신매체를 이용한 폭
	력)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
	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
	를 유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u>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u>
	금에 처한다.